

제 9 장 입소이용자 관리규정

제 67 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95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68 조 (시설입소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 및 3~5등급 어르신 중 시설입소 가능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 69 조 (입소 결정) 입소대상자의 입소는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과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입소심사를 통하여 최종 입소 결정을 한다.

제 70 조 (입소절차) 모든 시설입소대상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1. 이천시장 입소의뢰 및 상담
2. 입소상담 및 입소자 면담
3. 입소심사
4. 입소 통보
5. 입소

제 71 조 (이용계약 목적, 기간) 1.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그에 따르는 시설(서비스 제공자)과 입소자(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함에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72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아래 표와 같은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영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하기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비용을 입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은 서비스 항목 및 비용을 명확하게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호 및 처치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중 등), 투약 및 주사, 신체간호 및 그 밖의 처치, 의사 진료 보조
치매 관리서비스	행동 변화 대처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기타	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021년 01월 01일 기준)

(월/30일 기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총액	2021년 본인부담금		
			20%	12%	8%
본인부담금 (A)	1등급	2,157,000원	431,400원	258,840원	172,560원
	2등급	2,001,300원	400,260원	240,150원	160,110원
	3~5등급	1,907,120원	369,120원	221,470원	147,650원
비급여항목 (B)	식재료비	225,000원	7,500원 × 30일		
	기타(간식재료비)	33,000원	1,100원 × 30일		

본인부담금 합계 (A+B)	1등급	689,400원	516,840원	430,560원
	2등급	658,260원	498,150원	418,110원
	3~5등급	627,120원	479,470원	405,650원

3. 입, 퇴소 당일은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등급별 1일당 수가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당 수가에 50%를 산정 한다.

4. 외박 혹은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로 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는 등급별 1일당 수가에 50% 산정하여 청구하고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73 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4 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제73조에 의거 이용료 및 비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재계약을 실시한다.

제 75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을)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한 자는 일반적인 보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원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76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77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잣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78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 79 조 (시설입소자의 외박, 외출) 시설입소자는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 보호자와 동반하여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제 80 조 (보호자의 면회) 보호자의 시설입소자 면회 요청 시 면회기록부에 면회신청내역을 작성하고 본원 사무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81 조 (퇴소) 퇴소는 원하는 시설입소자와 보호자는 퇴소 1주일 전에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82 조 (임종과 장례절차) 1. 시설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종 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할 수 있다.
-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보호자들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 ③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① 사망 후의 보호자와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가족장의 경우 퇴소신청서와 시신 인수서를 작성케 하고 사망진단서를 청구한다.
- ③ 시설장의 경우 2일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무연고 시설입소자의 경우 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제 83 조 (유류금품 처분) 1.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① 당해 시설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의료 경비 부담
- ②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의 충당

③ 기타 당해 시설입소자와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 충당

2. 장례비용 등의 충당 후에 사용 잔액은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4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모든 시설물은 그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시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나, 치매 및 중증 환자들이 입소하여 계시기 때문에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및 일부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만일 어르신이 제한된 시설물의 사용 및 통행제한 구역의 통행을 원할 경우 어르신은 직원에게 요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고, 직원은 어르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시설물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한다.

3. 화재 위험이 있는 화기(모기향 포함)의 사용을 금지하며, 다리미, 전기난로 등의 전열 기구도 직원의 안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이나 금전 등은 사무실에 보관하여 분실을 방지한다.

5. 모든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6. 전염 및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에서 반입하는 물건 등은 사전에 직원에게 신고하여 사용한다.

7. 부패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절대 개인 보관을 할 수 없다.

제 85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